

아동학대 실태와 정책방안

Current Status of Child Abuse and Policy Implications



김유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최근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를 겪으면서 전통적인 가족주의의 쇠퇴, 핵가족화 현상과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형성, 경제의 양극화 현상, 취업모의 증가, 도덕적 가치관이 희박해지면서 아동학대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사회적으로 아동학대의 인식이 낮은 한편,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바 있는 「2007년 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2007년 8월을 기준으로 지난 1년 이내 발생한 아동학대발생률은 66.9%로 아동 10명당 6.7명 정도가 아동학대경험이 있었고, 특히 정서적 폭력(63.3%)과 신체적 폭력(49.7%)이 높았으며, 신체적 폭력의 대부분은 경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발생은 친부모의 아동기폭력경험, 음주정도, 거부정적요인, 교육 및 취업 사회적 수준 등에 따라 일정한 경향을 보였다. 학대 후 나타나는 피해증상(신체적 증상: 8.9%, 정신적 증상: 5.4%)에 비해 의료 처지를 경험한 비율은 3.6% 이하 수준으로 다수의 피해아동이 방치되었다.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대처방식은 66.7%가 대응하지 않았으며, 22.0%는 학대행위가 끝날 때까지 맞으면서 참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유구로는 아동학대 해결·예방프로그램의 참여와 보호 시설의 입소에 대한 욕구는 낮은 편이었으나, 아동학대신고전화인 1391을 이용하겠다는 의견은 높았다. 가정폭력 피해를 위한 사후적 정책으로 신체적·정신적 치료, 보호시설확충, 가해자의 강력한 법적조치, 상담서비스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고, 가정폭력예방 정책으로는 가족관계교육프로그램 및 다양한 기술보급에 대한 응답이 많았다.

정책방안으로는 학대유형별 맞춤형 정책개발 및 보급,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아동학대 대처교육·훈련 및 경찰의 개입 강화, 아동학대 홍보계몽 및 긴급보호체계 강화, 아동학대의 개념정립 및 기초통계자료 생산 등을 제시하였다.

1. 들어가며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는 우리사회의 특성인 부권중시의 가부장제적 전통과 유교적 영향으로 가정 내에서의 체벌을 인정하는 한편 사회 및 국가의 개입을 불허하는 의식이 팽배하여 문제의 심각성이 축소되었고, 사회적으로 외면되어 왔다.

그러나 그동안 사회 각계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개입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국제적으로 아동권리의식이 높아지고 1990년대 후반 유엔에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국가보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아동학대에 대한 법적·제도적 문제점에 대한 권고를 받으면서 정책적으로 관심의 대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2000년 아동복지법의 전문 개정에 따라 아동학

대를 예방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그에 따라 비공식적 민간기관 차원에서 이루어지던 아동학대의 예방활동은 정부의 공식적 활동으로 전환되는 계기를 이루었다. 즉,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활성화됨에 따라 아동학대의 신고접수 조사, 보호 및 격리조치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최근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를 겪으면서 전통적인 가족주의의 쇠퇴, 핵가족화 현상과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형성, 경제의 양극화 현상 등에 의한 가족원간의 갈등으로 이혼·별거 등에 의한 가족해체가 심화되고 있으며, 취업모의 증가 등으로 아동의 보호기능이 약화되고 있다. 이는 가정 내에서 아동의 방임, 유기가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대중매체의 발달과 성 개방으로 인하여 도덕적 가치관이 희박해지면서 가족 내에서 아동의 성학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사회의 급격한 변화로 아동학대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사회적으로 아동학대의 인식이 낮은 한편,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서비스가 체

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정책적인 효과 또한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본고는 아동학대발생수준과 발생원인을 분석하고, 피해증상 및 대처방식 등을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고의 분석자료는 2007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바 있는 「2007년 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¹⁾를 활용하였다.

2. 아동학대 발생 실태

본 고에서는 아동학대를 측정하기 위하여 Straus의 CTSPC, Form A(Parent-Child Conflict Tactics Scale, 1997) 중에서 20가지 척도를 활용하였다. 척도의 선택 기준은 최근 아동학대의 양상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학대행위를 포괄하고 있다. 즉, 정서적 폭력의 측정을 위하여 6개 척도²⁾, 신체적 폭력 측정을 위하여 8개척도³⁾, 방임 및 유기 측정을 위하여 4개척도⁴⁾, 성학대 측정을 위하여 5개 척도⁵⁾를 선정하였다.

1) 본 조사는 2007. 8. 6~10. 29일 기간 중 실시되었으며, 200개 조사구 10,000가구 중에서 조사원료가구는 9,847가구이었고, 분석 대상은 18세 미만의 아동 4,439명이었음.
 2) 정서적 폭력을 측정하는 척도는 아이에게 욕설 등 심한 말을 하는 행위, 아이에게 큰 소리를 지르는 행위, 아이에게 멀리 보내겠다고 혹은 집밖으로 나가라고 위협하는 행위 등임.
 3) 신체적 폭력을 측정하는 척도는 칼이나 흉기로 아이를 위협하는 행위, 아이를 쥐어박는 행위, 아이를 세계 밀치는 행위, 회초리로 아이의 손바닥이나 엉덩이를 때리는 행위, 손바닥으로 아이의 뺨을 때리는 행위, 회초리 이외의 물건(벨트, 막대기, 빗자루)으로 엉덩이 이외의 부분을 때리는 행위, 아이를 사정없이 마구 때리는 행위, 고의로 아이에게 화상을 입히는 행위 등임.
 4) 방임 및 유기를 측정하는 척도는 아이가 어른과 함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집에 혼자 두는 행위, 아이에게 필요한 음식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아이가 이유 없이 학교(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포함)에 결석해도 아무 말하지 않는 행위, 아이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임에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행위 등임.
 5) 성학대를 측정하는 척도는 어른이 아이에게 자신의 몸을 강제로 만져 달라고 하는 행위, 싫은데도 아이 옷을 억지로 벗게 하여 몸을 보려고 하는 행위, 싫은데도 아이의 몸을 만진 적이 있는 행위, 아이의 성기를 만진 적이 있는 행위, 아이에게 억지로 입을 맞추려고 한 적이 있는 행위 등임.

1) 전체 및 학대유형별 아동학대발생률

2007년 8월을 기준으로 지난 1년 이내 발생한 아동학대발생률은 66.9%로 아동 10명당 6.7명 정도가 아동학대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선행연구결과와 비교하면 2000년도 아동학대발생률은 43.7%로, 2004년도는 69.2%로 조사되어서 본 연구결과는 2000년도에 비해서 23.2%p가 증가한 수치이나 2004년도에 비해서는 2.3%p가 감소하였다. 이는 각 조사마다 조사대상과 조사대상 기간, 그리고 아동학대의 측정척도 및 범위가 다른데서 오는 차이로 생각된다.

표 1. 전국 아동학대발생률의 연도별 비교

구분	2000년도 ¹⁾	2004년도 ²⁾	본 조사	
			아동학대 발생률	(분석대상수)
전체	43.7	69.2	66.9	(4,425)

자료: 1) 보건복지부, 「아동학대의 실태 및 후유증 연구」, 2000.
2) 여성가족부, 「2004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 2005.

2007년도 전국 아동학대발생률을 학대유형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정서적 폭력은 63.3%로 다른 유형에 비해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신체적 폭력이 49.7%로 높았고, 방임은 2.7%로 극히 미미하였으며 성학대는 1.1%로 낮았다.

그리고 신체적 폭력 중에서 경한 폭력발생률⁶⁾은 48.8%, 중한 폭력발생률⁷⁾은 8.7%로 신체적 폭력의 대부분이 경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도와 2004년도 조사결과(정서적 폭력: 66.1%, 신체적 폭력: 51.9%)를 비교하면 정서적 폭력과 신체적 폭력은 2004년도에 비해서 각각 2.8%p와 2.2%p가 감소한 수치를 보이며, 폭력 정도별(경한 폭력: 51.5%, 중한 폭력: 9.1%)로는 2004년도에 비해서 경한폭력은 2.7%p, 중한폭력은 0.4%p가 감소하였다.

2) 아동특성 및 학대유형별 아동학대발생률

아동학대발생률은 남아가 69.2%이고, 여아는 64.4%로 남아가 여아보다 4.8%p 높았다. 취학전 아동이 67.4%로 전체 수준보다 0.5%p 높았으며, 초등학교 학생은 89.9%로 취학전 아동보다 22.5%p 높았다. 이에 비해 중학생의 아동학대 발생률은 49.9%이었고, 고등학생의 아동학대발생률은 32.7%로 초등학생에 비해서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아동학대발생률은 연령이 높을수록 낮아지는 특성을 보였다. 이는 여성가족부의 2004년 조사결과, 연령별 아동학대발생률은 초등학생은 66.8%, 중학생이 53.6%, 고등학생이 36.5%로 연령이 많아질수록 낮아지는 것과 동일한 경향을 보였다.

표 2. 학대유형 및 폭력정도별 아동학대발생률의 연도별 비교

구분	2004년도 ¹⁾				본 조사						
	정서적 폭력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신체적 폭력			방임	성학대	(분석대상수)
		경한 폭력	중한 폭력	(경한+중한)폭력		경한 폭력	중한 폭력	(경한+중한)폭력			
전체	66.1	51.5	9.1	51.9	63.3	48.8	8.7	49.7	2.7	1.1	(4,425)

자료: 1) 여성가족부, 「2004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 2005.

표 3. 아동특성 및 학대유형별 지난 1년간 아동학대발생률

구분	아동학대 발생률	정서적 폭력	신체적 폭력			방임	성학대	(분석대상수)	
			경한 폭력	중한 폭력	(경한+중한) 폭력				
전체	66.9	63.3	48.8	8.7	49.7	2.7	1.1	(4,425)	
성	남아	69.2	65.4	51.0	9.1	52.0	2.7	1.3	(2,315)
	여아	64.4	60.9	46.3	8.3	47.2	2.7	0.9	(2,123)
연령 (학제)	취학전	67.4	64.5	50.0	6.7	50.6	1.0	1.2	(1,024)
	초등학생	89.9	86.6	69.4	11.1	70.1	4.2	1.7	(1,760)
	중학생	49.9	43.8	33.1	8.9	34.6	2.5	0.6	(885)
	고등학생	32.7	30.3	17.8	5.9	19.2	2.0	0.4	(769)

남아가 여아보다 모든 학대유형별로 아동학대발생률이 높았으며, 남아는 정서적 폭력발생률과 신체적 폭력발생률, 그리고 성학대발생률이 전체보다도 높았다. 또한 초등학생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모든 학대유형별로 아동학대발생률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취학전 아동, 중학생, 고등학생 순으로 높았으며, 정서적 폭력과 신체적 폭력은 아동연령별로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3. 아동학대 발생 원인

본고에서는 선행연구결과 검증된 아동학대 발생원인인 부모의 아동기 폭력경험, 음주정도, 부모의 가부장적 요인, 생활만족도, 사회적 스트레스 정도, 부모의 사회적 수준을 중심으로 아동학대 발생수준을 살펴보았다.

6) 신체적 폭력 8개 유형 중에서 경한폭력은 아이를 쥐어박는 행위, 아이를 세계 밀치는 행위, 회초리로 아이의 손바닥이나 엉덩이를 때리는 행위, 손바닥으로 아이의 뺨을 때리는 행위 등 4개 유형이 해당됨(Straus, 1979).
7) 신체적 폭력 8개 유형 중에서 중한폭력은 칼이나 흉기로 아이를 위협하는 행위, 회초리 이외의 물건(벨트, 막대기, 빗자루)으로 엉덩이 이외의 부분을 때리는 행위, 아이를 사정없이 마구 때리는 행위, 고의로 아이에게 화상을 입히는 행위 등 4개 유형이 해당됨(Straus, 1979).

1) 부모의 아동기 폭력 경험 및 음주정도별 아동학대발생률

부모의 아동기 폭력경험은 가족으로부터 폭력을 받은 경험과 폭력을 목격한 경험 등을 조합하여 네 가지 범주로 구성하여 아동학대발생률을 살펴보았다.

아버지의 경우는 일정하지 않았으나 아동기에 맞은 경험만 있는 경우 아동학대발생률은 68.8%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목격경험만 있는 경우 68.4%, 둘 다 있는 경우 66.7%, 두 가지 모두 없는 경우는 66.0%로 가장 낮았다. 어머니의 경우도 아동기에 맞은 경험만 있는 경우 아동학대발생률은 78.2%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둘 다 있는 경우 74.4%, 목격경험만 있는 경우 72.9%, 두 가지 모두 없는 경우는 66.8%로 가장 낮았다. 따라서 부모 모두 아동기에 맞은 경험이 있

는 경우가 타 경우에 비해서 아동학대발생률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아버지는 목격경험이 있는 경우, 어머니는 맞은 경험과 목격 경험이 둘 다 있는 경우 높았다. 이는 성장기에 폭력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였거나 가족간에 폭력이 발생한 것을 목격한 경우 학습 효과와 모방심리에 의해 성인이 되어서 자녀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폭력을 되풀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음주정도에 따른 아동학대발생률을 보면, 아버지의 경우는 음주를 조금마시는 경우 아동학대발생률이 69.3%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많이 마시는 경우 67.8%, 비음주인 경우는 58.8%로 가장 낮았다. 어머니는 음주에 따라 일정한 경향을 보여 많이 마신 경우 아동학대발생률은 71.2%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조금마시는 경우 68.4%, 비음주인 경우 61.7%로 가장 낮았다. 따라서 부모 모두 음주인 경우가 비음주보다 아동

표 4. 부모의 아동기 폭력 경험여부별 지난 1년간 아동학대발생률

(단위: %, 명)

구분	두 가지 모두 없음	맞은 경험만 있음	목격 경험만 있음	둘 다 있음	(분석대상수)
부	66.0	68.8	68.4	66.7	(2,766)
모	66.8	78.2	72.9	74.4	(3,980)

주: 부모의 아동기 폭력경험여부는 가족으로부터 폭력을 받은 경험과 폭력을 목격한 경험 등을 조합하여 두 가지 모두 경험하지 않은 경우, 맞은 경험만 있는 경우, 목격한 경험만 있는 경우, 두 가지 모두 경험한 경우 등 네 가지 범주로 구성함.

표 5. 부모의 음주정도별 지난 1년간 아동학대발생률

(단위: %, 명)

구분	많이 마심	조금 마심	비음주	(분석대상수)
부	67.8	69.3	58.8	(1,957)
모	71.2	68.4	61.7	(2,820)

주: 많이 마심은 일주일에 3~4일 가량으로 매 음주시 소주 1병 이상, 조금 마심은 한달에 1~3일 가량으로 매 음주시 소주 한 병 이하 수준, 비음주는 전혀 안 마시는 것을 말함.

학대발생률이 높았다.

2) 부모의 가부장적 요인별 아동학대 발생률

가부장적 요인은 부부의 의사결정권과 가부장적 성역할 태도 등에서 잘 나타난다.⁸⁾ 부부의 의사결정권 즉, 부부의 권력구조별로 아동학대발생률을 보면 부모 모두 아내가 혼자 결정하거나 아내가 보다 많이 결정하는 아내우위형인 경우 아동학대발생률이 가장 높았고, 부부평등형에서 아동학대발생률이 가장 낮았다. 즉, 아내

우위형과 부부평등형 간의 아동학대발생률은 아버지는 6%p, 어머니는 9%p로 부모의 아동학대발생률은 부부의 권력구조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났다.

부모 모두 가부장적 성역할태도가 낮은 경우 아동학대발생률이 높아서 부모의 가부장적 요인에 따라 아동학대발생률은 일정한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부모의 가부장적 가치관에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부장적 가치관으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에 대처하지 못할 때 아동학대가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6. 부모의 권력구조 유형별 지난 1년간 아동학대발생률

(단위: %, 명)

구분	아내혼자+아내가 보다 많이 결정형	남편혼자+남편이 보다 많이 결정형	부부평등형	(분석대상수)
부	68.3	66.7	62.3	(2,753)
모	71.3	68.7	61.7	(3,756)

표 7. 부모의 가부장적 성역할 태도별 지난 1년간 아동학대발생률

(단위: %, 명)

구분	높음	중간	낮음	(분석대상수)
부	61.9	66.6	71.2	(2,823)
모	62.6	67.6	71.7	(3,972)

주: 1) 가부장적 성역할태도는 9개 지표 즉, 여자는 혼인할 때까지 순결을 지켜야 한다, 결혼한 여자가 남편 아닌 다른 남자와의 성관계를 갖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가족부양은 일차적으로 남자가 책임져야 한다, 부부 중에서 남편이 가족의 대표가 되어야 한다, 아내는 대중 앞에서 남편에게 반박하지 말아야 한다, 여자가 개인경력을 쌓는 것도 좋으나 결혼과 가정이 우선되어야 한다, 부부갈등이 생기면 아내는 남편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 성관계는 여성이 주도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남자는 혼인할 때까지 순결을 지켜야 한다 등으로 측정함. 2) 각 지표는 5점 척도, 즉 전혀 그렇지 않음(1점), 그렇지 않음(2점), 보통(3점), 그럼(4점), 매우 그럼(5점)으로 가부장적 성역할태도의 점수는 9개 지표의 평균을 산출하였고, 평균이 4점 이상인 경우는 부모의 가부장적 성역할태도가 높음, 3점은 중간, 2점 이하는 부모의 가부장적 성역할 태도가 낮음으로 구성함.

8) 선행연구결과와 의하면 성의식에 대해 보수적인 사람이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비율이 높았고, 가정폭력에 대한 허용적인 태도와 아내 폭력 간에는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음. 즉, 여성의 역할에 대한 가부장적 의식은 여성에 대한 폭력 허용도와 폭력실태와 관련이 있음을 보여줌(김재엽(1998), 가정폭력의 태도와 행동간의 상관관계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제2호; 변화순 외(2001), 한국의 가정폭력관련법 제정 이후 가정폭력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3) 부모의 생활만족도 및 사회적 스트레스 정도별 아동학대발생률

생활만족도에 따른 아동학대발생률을 보면 아버지의 경우는 일정하지 않았으나 어머니의 경우는 생활만족도가 낮은 경우 아동학대 발생률이 70.4%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생활만족도가 중간인 경우 68.0%, 생활만족도가 높은 경우는 66.9% 순이었다. 따라서 아버지는 생활만족도별로 아동학대 발생률이 일정한 경향을 보이지 않았으나, 어머니의 경우는 생활만족도가 낮은 경우 아동학대 발생률이 높았다.

사회적 스트레스 정도에 따라 아동학대 발생

률을 보면, 아버지의 경우는 사회적 스트레스가 1~2점인 경우 아동학대 발생률이 67.8%로 가장 높았으며, 3~4점인 경우는 63.7%, 0점인 경우 65.4%, 5점 이상인 경우 57.1%이었다. 그러나 어머니의 경우는 다른 경향을 보여서 사회적 스트레스가 5점 이상인 경우 아동학대 발생률은 75.0%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사회적 스트레스가 없는 경우 69.0%, 1~2점 68.2%, 3~4점은 61.8%이었다. 이는 부모의 사회적 스트레스 강도에 따라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로 인한 갈등을 완화할 만한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지 못할 때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8. 부모의 생활만족도별 지난 1년간 아동학대발생률

(단위: %, 명)

구분	높음	중간	낮음	(분석대상수)
부	63.4	67.7	65.2	(2,847)
모	66.9	68.0	70.4	(3,998)

주: 1) 생활만족도는 5개 지표 즉, 부모·친척과의 관계가 좋다, 친구와의 관계가 좋다, 여가활동을 잘 하는 편이다,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보면 가치 있는 사람으로 느낀다, 전반적으로 나의 생활에 만족한다 등으로 측정함.
2) 각 지표는 5점 척도 즉, 전혀 그렇지 않음(1점), 그렇지 않음(2점), 보통(3점), 그럼(4점), 매우 그럼(5점)으로 생활만족도의 점수는 5개 지표의 평균을 산출하였고, 평균이 4점 이상인 경우는 부모의 생활만족도가 높음, 3점은 중간, 2점 이하는 부모의 생활만족도가 낮음으로 구성함.

표 9. 부모의 사회적 스트레스 정도별 지난 1년간 아동학대발생률

(단위: %, 명)

구분	없음	1~2점	3~4점	5점 이상	(분석대상수)
부	65.4	67.8	63.7	57.1	(2,844)
모	69.0	68.2	61.8	75.0	(4,008)

주: 1) 사회적스트레스 정도는 9개 지표 즉, 집안 형편이 이전보다 어려워졌다, 선생님이나 친구들과 문제가 있다, 나나 가족이 심하게 아프거나 다쳤다, 학교성적에 문제가 있다, 이성친구와 헤어졌거나 문제가 있었다, 공부 때문에 부모님께 심하게 꾸중을 듣거나 야단을 맞았다, 약물중독으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우울증을 앓고 있다, 우울증이나 사람 기피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등으로 측정함.
2) 각 지표는 예(1점), 아니오(0점) 척도로 사회적스트레스 정도는 9개 지표를 합산하여 총점을 산출하였고, 사회적스트레스는 총점을 없음, 1~2점, 3~4점, 5점 이상으로 구성함.

4) 부모의 교육수준 및 취업별 아동학대발생률

아동학대발생률은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으며 어머니보다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라 일정한 경향을 보였다. 아버지만 고등학교 이하인 경우(어머니는 대학 이상) 아동학대발생률은 72.3%로 가장 높았고, 부모 모두 대학이상인 경우는 70.8%로 약간 낮았다. 반면, 아버지만 대학 이상(어머니는 고등학교 이하)인 경우의 아동학대발생률은 67.3%이었고, 부모가 모두 고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경우는 65.5%로 가장 낮았다. 따라서 부모 모두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가 낮은 경우보다 아동학대 발생률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는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자녀의 학업에 대한 관심과 기대 등으로 자녀와의 갈등이 많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부모의 취업에 따라 아동학대 발생률은 다르

게 나타났다. 아버지만 취업한 경우 아동학대 발생률은 70.1%이었고, 부모 모두 취업한 경우도 66.9%로 높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비취업이고 어머니만 취업한 경우의 아동학대 발생률은 57.5%이었고, 부모 모두 비취업인 경우는 45.5%로 낮았다. 따라서 부모가 취업한 경우가 비취업보다 아동학대 발생률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아동학대를 부모의 취업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우며 이는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라 다른 경향을 보일 것으로 생각된다. 즉, 소득수준이 높고, 부모가 취업한 경우는 자녀의 학업에 대한 기대로 인한 자녀와의 갈등 때문일 가능성이 높은 반면, 소득수준이 낮고, 부모가 취업한 경우는 자녀의 방임, 유기 등으로 자녀가 탈선하는 데서 오는 갈등 때문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설명된다.

표 10. 부모의 교육수준별 지난 1년간 아동학대발생률

(단위: %, 명)

구분	부모 모두 대학 이상	아버지만 대학 이상	어머니만 대학 이상	부모 모두 고등학교 이하	(분석대상수)
아동학대발생률	70.8	67.3	72.3	65.5	(3,938)

표 11. 부모의 취업여부별 지난 1년간 아동학대발생률

(단위: %, 명)

구분	부모 모두 취업	아버지만 취업	어머니만 취업	부모 모두 비취업	(분석대상수)
아동학대발생률	66.9	70.1	57.5	45.5	(3,941)

4. 피해증상 및 대처방식

1) 학대 후 피해증상

아동학대 후 나타나는 신체적 증상은 별 증상이 없다는 응답이 91.1%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가벼운 상처, 멍드는 정도의 타박상이 7.4%이었으며 두통으로 머리가 멍함은 1.4%, 고막이 터지고 이가 부러짐 같은 심각한 증세는 0.1%로 상당히 미미하였다.

학대 후 신체적 증세가 나타나는 아동을 대상으로 의료처치 경험을 조사한 결과, 의료기관에

서 의료적 조치를 받은 비율은 3.6%에 불과하였고 나머지 96.4%는 의료적 조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각한 신체적 증상이 발생한 비율이 0.1%인 점을 감안하면 심각한 경우에만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아동학대 후 나타나는 정신적 증상은 별 증상이 없다는 응답이 94.6%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자신에 대한 실망, 무력감, 자아상실이 2.7%, 매사에 불안, 우울은 1.5%이었다. 또한 미미하나 죽고 싶다는 생각, 가해자를 죽이고 싶은 충동이나 가해자가 죽었으면 하는 생각 등 정신적인 학대 후유증이 심각함을 보여주어서

표 12. 아동의 학대 후 나타나는 신체적 증상

(단위: %, 명)

구분	별 증상 없음	두통으로 머리가 멍함	가벼운 상처, 멍드는 정도의 타박상	고막이 터지고 이가 부러짐	기타	계(수)
전체	91.1	1.4	7.4	0.1	0.1	100.0(2,942)

표 13. 아동의 신체적 증상의 의료처치 경험

(단위: %, 명)

구분	없음	유료로 받음	무료로 받음	계(수)
전체	96.4	2.4	1.2	100.0(255)

표 14. 아동의 학대 후 나타나는 정신적 증상

(단위: %, 명)

구분	별 증상 없음	자신에 대한 실망, 무력감, 자아상실	폭력으로 죽을 것 같은 생각	가해자를 죽이고 싶은 충동	학대한 사람이 죽었으면 하는 생각	매사에 불안, 우울	죽고 싶다는 생각	사람 만나는 것을 기피	기타	계(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학대 후 정신적 증세가 나타나는 아동 중에서 의료기관에서 의료적 조치를 받은 비율은 1.3%에 불과하였고, 나머지 98.7%는 의료적 조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심각한 정신적 증상이 발생한 비율이 5.4%인 점을 감안하면 정신적 증세가 심각함에도 다수의 피해아동이 방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15. 아동의 정신적 증상의 의료처치 경험

(단위: %, 명)

구분	없음	유료로 받음	계(수)
전체	98.7	1.3	100.0(149)

2) 대처방식

가족으로부터 학대를 받았을 당시 아동의 대처방식은 66.7%인 과반수 이상이 대응하지 않

았으며, 아동의 22.0%는 학대행위가 끝날 때까지 맞으면서 참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이 학대발생 시 대응할 만한 능력이 없음을 말하며 학대발생 후에 아동에게 미치는 피해가 심각함을 시사한다.

아동이 학대를 받고 경찰에 신고한 경험률은 0.1%로 극히 미미하였으며 나머지 99.9%는 경찰에 신고하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아동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파악한 결과, 기타를 제외하고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가 41.2%로 많았고 이외에 창피해서와 귀찮아서는 각각 1.9%이었으며, 미미하나 어른이 무서워서인 경우도 0.8%로 나타났다. 즉, 학대발생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가해자와의 관계, 감정적인 요인 등도 있으나 다수의 경우가 경찰신고제도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나타나서 동 제도에 대한 인식개선과 함께 제도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표 16. 아동의 대처방식

(단위: %, 명)

구분	함께 폭력행사	무조건 피함	주위에 도움요청	끝날 때까지 맞으면서 참음	대응하지 않음	기타	계(수)
전체	3.7	3.5	0.2	22.0	66.7	4.0	100.0(2,946)

표 17. 학대행위에 대한 경찰신고 경험률 및 미신고 이유

(단위: %, 명)

구분	신고 경험률	미신고 이유					계(수)
		어른이 무서워서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창피해서	귀찮아서	기타	
전체	0.1	0.8	41.2	1.9	1.9	54.1	100.0(2,905)

5. 서비스욕구

1) 서비스프로그램욕구

아동학대 해결·예방프로그램의 참여의향은 51.9%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아동학대 신고전화인 1391을 이용하겠다는 의견은 87.6%로 높았으나, 보호시설의 입소의향은 54.2%로 과반수 정도에 머물렀다. 즉, 아동학대의 해결 및 예방프로그램의 참여와 보호시설의 입소에 대한 욕구는 낮은 편이었으나, 아동학대 신고전화인 1391을 이용하겠다는 의견은 높았다.

남아는 여아보다 아동학대 해결·예방프로그램의 참여, 아동학대 신고번호의 이용의향 그리고 보호시설의 입소의향 등이 낮아서 아동학대 서비스프로그램의 이용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중학생은 고등학생보다 아동학대 신고번호의 이용의향은 높았으나, 아동학대 예방프로그램의 참여와 보호시설의 입소에 대한 욕구는 고등학생보다 낮았다.

2) 사후서비스 욕구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하여 사후적으로 필요한 정책으로는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응답한 비율이 19.5%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보호시설 확충, 가해자의 강력한 법적조치, 상담서비스제공 순으로 높았다. 여아는 남아에 비해 보호시설확충,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응답한 비율이 높은 반면, 남아는 가해자의 강력한 법적 조치, 상담서비스 제공, 주거시설 마련, 교육서비스제공 등의 응답이 많았다. 중학생은 고등학생에 비해 신체적·정신적 치료, 교육서비스 제공 등의 응답이 많았고, 고등학생은 가해자의 강력한 법적 조치를 응답한 비율이 높아서 아동 특성별로 차별화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3) 예방정책

필요한 가정폭력예방정책으로는 가족관계 교육프로그램의 제공을 응답한 비율이 25.3%로

표 18. 아동특성별 서비스욕구

(단위: %, 명)

구분	아동학대 해결· 예방프로그램 참여의향		아동학대 신고번호 이용의향		보호시설 입소의향		(분석대상수)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전체	51.9	48.1	87.6	12.4	54.2	45.8	(1,084)
성	남아	45.2	54.8	83.6	16.4	46.2	(511)
	여아	58.6	41.4	91.3	8.7	62.0	(573)
연령 (학제)	중학생	48.8	51.2	88.4	11.6	52.6	(491)
	고등학생	54.4	45.6	87.0	13.0	55.6	(592)

주: 서비스욕구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만 조사됨.

표 19. 아동특성별 필요한 사후정책

(단위: %, 명)

구분	보호 시설 확충	가해자의 강력한 법적조치	상담 서비스 제공	사회적 인식 개선	신체적 및 정신 적 치료	주거 시설 마련	직업 훈련 및 직장알선	교육 서비스 제공	예방 및 인권 교육	기타	계(수)
전체	18.8	18.8	13.2	6.3	19.5	7.7	4.3	4.0	3.7	3.9	100.0(1,423)
성	남아	17.6	20.1	14.3	7.0	14.0	8.9	5.7	4.1	3.8	100.0(686)
	여아	19.8	17.5	12.2	5.6	24.6	6.6	4.1	2.4	3.9	100.0(737)
연령(학제)	중학생	18.6	16.4	13.3	6.1	21.3	8.0	4.3	3.6	4.0	100.0(671)
	고등학생	18.9	20.9	13.2	6.4	17.9	7.5	4.1	3.7	3.6	100.0(750)

주: 서비스욕구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만 조사됨.

가장 높았고, 다음은 원만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다양한 기술보급이 19.5%,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법적조치가 15.9%, 가정폭력예방의 홍보·계몽 강화가 11.0% 순이었다. 따라서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은 가족관

계교육프로그램 및 다양한 기술보급,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법적조치, 가정폭력예방의 홍보·계몽 강화 등으로 나타났다. 동 정책은 연령별로도 전체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표 20. 아동연령별 가정폭력예방에 필요한 정책

(단위: %, 명)

구분	전체	중학생	고등학생
가족관계 교육프로그램제공	25.3	23.5	26.9
가정폭력예방의 홍보·계몽 강화	11.0	12.8	9.4
폭력허용적 사회문화 개선	3.9	4.4	3.4
원만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다양한 기술보급	19.5	19.8	19.3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	15.9	13.9	17.8
상담서비스	6.8	7.2	6.4
사회적 인식개선	6.1	5.3	6.9
기타	0.3	0.1	0.4
모르겠음	11.2	13.0	9.4
계(수)	100.0(1,447)	100.0(682)	100.0(765)

주: 서비스욕구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만 조사됨.

6. 정책방안

1) 학대유형별 맞춤형 정책개발 및 보급

전국 가정폭력실태조사결과, 최근 1년간 발생한 아동학대 발생률은 66.9%로 아동 10명당 6.7명 정도가 아동학대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가정 내에서 아동학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정서적 폭력, 신체적 폭력의 발생이 많았으며, 방임과 성학대도 다소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는 사전적으로 아동학대발생의 원인을 규명하여, 그 원인을 제거하는 예방정책과 사후적으로는 피해자의 치료·회복을 위하여 학대유형별로 다양한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구체적인 예방정책으로는 아동학대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난 부모-자녀간, 부부간의 관계에서 오는 갈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민주적이고 평등한 부모-자녀 관계상 확립, 양성평등적 부부관계상의 확립 및 평등한 가족관계상을 확립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치료·회복 프로그램은 피해자의 학대특성에 따라 신체적 치료와 함께 심리·정서적 상담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학대유형별로 시설의 전문화 및 다양화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여성이 거주하는 시설, 일상생활이 가능한 여성이 거주하는 시설 등으로 구분되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2)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아동을 학대한 가해자의 대다수는 친부모로

파악되어서 친부모의 아동기 폭력 경험, 음주정도, 가부장적 요인, 생활만족도, 사회적 스트레스 정도 등에 따라 아동학대 발생률은 일정한 경향을 보였다. 이는 각종 스트레스나 사회적 지지부족 등을 제거하여 아동학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학대를 차단하는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하며, 일환으로 부모자조집단을 구성하여 부모를 치료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는 가정폭력과 밀접하므로 원만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다양한 기술 등이 보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최근 증가하는 아동의 성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정이나 교육기관을 통해 아동연령별 맞춤 성교육 및 성교육에 방프로그램 등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3) 아동학대 대처교육·훈련 및 경찰의 개입 강화

아동학대 이후 피해증상에 대한 치료나 대처방식이 상당히 소극적이었으며, 가해자를 경찰에 신고한 경험도 상당히 낮았다. 또한 학대발생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경찰신고제도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아동학대 발생시 사후 대처방법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사후대처방안은 가해자의 특성과 폭력상황 그리고 학대유형별로 차별화된 대처방식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피해자의 지역사회내의 자원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관련 전문보호기관, 상담기관 및 피해자보호 시설에 대한 정보제공 및 안내 등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경찰신고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선형적으로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관의 인식 및 태도가 개선되어야 하며, 112신고체제와 아동학대 신고전화 등을 통한 신속한 대응으로 경찰의 초기대응능력을 제고한다. 아울러, 경찰관의 입시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경찰조직 내에 아동학대를 포함한 가정폭력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가정폭력전담반을 설치하여 전문성을 제고한다.

4) 아동학대 홍보·계몽 및 긴급보호체계 강화

아동학대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하여 아동학대를 포함한 가정폭력예방을 위한 범국민 홍보 및 계몽 등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홍보물, 대중매체 그리고, 전광판 및 캠페인 등을 활용하며, 담당경찰, 학교교사, 검사 등 관련 공무원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및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다른 한편, 아동학대의 신고접수 Hot Line인 1577-1391, 복지콜센터 129를 중심으로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하여 긴급보호서비스 체계를 강화

한다. 이와 함께, 위기상황에 처한 피해아동의 위험정도와 맞춤서비스를 초기상담을 통하여 진단하고 법·의료관련 정보제공부터 수사, 법률, 의료, 상담, 보호서비스 등을 신속하게 연계한다.

5) 아동학대의 개념정립 및 기초통계자료 생산

아동학대 개념 및 학대범위가 연구 및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되고 표준화된 개념이 없어서 아동학대 정책수립에 제한점이 되고 있다. 이에 국가차원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우리의 문화적 특성에 맞는 아동학대 개념을 정립하고 표준화된 측정도구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전국단위의 아동학대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아동학대발생률 통계를 산출하고 급변하는 아동의 학대실태 및 원인을 파악하여 시의적인 아동학대의 대응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